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3. 11. 20----------사하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03. 11. 20

다. 상정일자 : 제11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(폐회중)

제4차 총무위원회(2003. 11. 24)

2. 제안설명요지(조동규 재무과장)

가. 제안사유

○ 지방재정법 제77조, 같은법시행령 제84조 및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으로 취득하여야 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목적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금으로 구평동 한센간이양로시설 부지를 구유재산으로 취득코자 함

(단위 : ㎡, 천원)

사 업 명	구분	소재지	면적 (평)	지 목 (구조)	시설개요	소요예산
계			454 (137)			138,470
구평동 한센간이양로시설 건립부지매입	토지	435-178	454 (137)	대	한센간이양로시설 예정부지	138,470

3. 관계법령

○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

○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○ 본 변경 승인안은 부산광역시의 2003년 민간에대한 자원보조금(국비) 1억원을 구평동소재 성아원내 한센경로당건립비로 확보해 놓고 건축허가후 내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,

○ 해당부지가 타인소유로 되어 있어 건축허가 불가하여 지금까지 예산을 내시받지 못하였던 것으로, 금년말까지 예산배정 신청하지 못하면, 국비로 반환해야 하는 실정에 있어 긴급매입코자 하는 사안으로,

○ 부지매입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예산중 구평동에 배정된 25억원중 복지회관건립비(20억)를 제외한 5억원은 경로당 건립비로 사용키로 되어 있었던바, 금회에 그일부를 부지매입비(138,470천원)로 사용코자 하는것임,

○ 문제는 이런 현황을 성아원 관계자와 시담당자만 알고 추진하다 마땅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자 뒤늦게 이 사실을 구청에 알려, 일을 추진하다 보니 다소 사전 계획 없는 행정으로 비춰지는 면이 있지만, 구민의 혜택을 감안하여 취득 승인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됨.

5. 질의답변요지 : 생략

6. 토 론 요 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